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60호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 김덕주 의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전영옥 의원
김명회 의원, 전선아 의원
한상화 의원

1. 제정이유

○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마련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 제7조)
❍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8조)
❍ 실태조사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 입법예고 :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당진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본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및「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신고 · 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괴롬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신고·력

등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61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한상화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덕주 의원

1. 개정이유

❍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사유를 명확하게 모른 채 방청 제한이 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4. 8. 5.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의 안내 의무 등을 포함하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2. 주요내용

❍ 방청을 제한할 때는 대상 주민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고 문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9조의 2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9조, 제75조, 제97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 생략(비예산)

❍ 입법예고: 2025. 4. .() ~ 4. .()

○ 협 의: 해당없음

○ 기 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

당진시의회 규칙 제 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제25조의2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방청제한 결정서

신 청 자	
방청인원	
소속 및 단체	
방청일자	
방청장소	
제한사유	
제한근거	

20 년 월 일

위와 같은 사유로 방청을 제한하기에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해당 문서를 교부합니다.

당진시의회 의장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5조의3 (생 략)

<신 설>

<신 설></td><td>제25조의2 (현행 제25조의3과 같음)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별지 서식]

방청제한 결정서

<table>
<tr><td>신 청 자</td><td></td></tr>
<tr><td>방청인원</td><td></td></tr>
<tr><td>소속 및 단체</td><td></td></tr>
<tr><td>방청일자</td><td></td></tr>
<tr><td>방청장소</td><td></td></tr>
<tr><td>제한사유</td><td></td></tr>
<tr><td>제한근거</td><td></td></tr>
<tr><td colspan="2">20 년 월 일

위와 같은 사유로 방청을 제한하기에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해당 문서를 교부합니다.

당진시의회 의장</td></tr>
</table>
</td></tr>
</table>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붙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2024. 9.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결과는 [붙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에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 해당 부서로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도개선 의결서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양식)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인

수신자 광역의회, 기초의회(시군의회), 기초의회(구의회)

전결	김건구	심세제도개선 과장	박상근	권익개선심사 국장	2024. 8. 5. 안성심

협조자

시행 권익제도개선과-1979 (2024. 8. 5.) 접수 의회사무국-4135 (2024. 8. 5.)

주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34 팩스번호 044-200-7922 / bullock@korea.kr / 대국민 공개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6.3.~7.31.)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62호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 전영옥 의원, 서영훈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조상연 의원, 김명회 의원, 전선아 의원, 한상화 의원

1. 제정이유

○ 당진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홍보활동의 원칙 (안 제3조)

다. 의정홍보를 위한 사업과 홍보매체의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5조)

라.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9조)

마.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안 제11조)

사. 자료의 관리, 공모전·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회의 활동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운영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당진시의회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의정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당진시 인구·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정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의정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 및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63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발 의 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김명회 의원, 한상화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법제처는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을 통해 이와 같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개선을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를 삭제하여 당진시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1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나.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2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다.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라.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4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마.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5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바.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사.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7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아.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8조)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4. . ~ 2025. 4.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5조(「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6조(「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요청 및 협조)”를 “(자료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료요청)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후단 삭제>
제2조(「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후단 삭제> <삭 제>
제3조(「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7조(정기·재조사 등 점검) ① ~ ③ (생 략)	제17조(정기·재조사 등 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 ---------- ---------- ---------- ---------- ----------. <후단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추진계획)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요청할 ------. <후단 삭제>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자료요청 및 협조) ①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요청)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있다.
제8조(「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제15조(회의록) ① (생 략)	제15조(회의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 ---------- ---------- ---------- ---------- ---------- ----------. <후단 삭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윤명수 의원**

❍ 제안이유

- 법제처는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을 통해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및 자치법규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

❍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기업육성과, 항만수산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Ⅱ 주요내용

❍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1조)

❍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조)

❍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렝의 개정(안 제4조)

❍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5조)

❍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7조)

❍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8조)

❍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9조)

❍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11조)

❍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안전총괄과) 종합의견**

1.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기업육성과) 종합의견**

1.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항만수산과) 종합의견**

1.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는 점검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문화체육과) 종합의견**

1.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2.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무상사용권을 규율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평생학습새마을과) 종합의견**

1.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무상사용권을 규율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사회복지과) 종합의견**

1.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개정 타당, 부서 조례 개정 추진 예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소관부서에서 당진시복지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 예정.

2.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여성가족과) 종합의견**

1.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2.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종합의견**

1.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소관부서(질병관리과) 종합의견**

1.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개정 타당

- 법률의 위임 없이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으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 본 조례안은 「2023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례집」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붙임1]**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03) **[붙임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03			
정 책 명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명	최현욱	전화번호	041-350-30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기획예산담당관장 귀하

붙임3 **의원발의 조례안(윤명수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을 위한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조(「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조(「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조(「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6조(「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7조(「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요청 및 협조)”를 “(자료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료요청)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7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당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후단 삭제>
제2조(「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생 략)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단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생 략)	제12조(자료의 수집·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조(「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7조(정기·재조사 등 점검) ①	제17조(정기·재조사 등 점검)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 ---------- ---------- ---------- ---------- ---------- ----------. <후단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당진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추진계획) ①·② (생 략)	제4조(추진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 ---------- ---------- 요청할 ------. <후단 삭제>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삭 제>

다.	
제7조(「당진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자료요청 및 협조) ①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요청)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있다.
제9조(「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제15조(회의록) ① (생 략)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제15조(회의록)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의견의 청취) ---------- ---------- ----------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후단 삭제>
제10조(「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의 개정)	
제36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3조(사업) ① (생 략) 제12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64호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 조상연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전선아 의원

1. 개정이유

○ 내·외국인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및 외국인 주민의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정비 (안 제4조)
나. 지원의 범위 확대 (안 제6조)
다.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신설 (안 제6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예산조치 : 5천만원 미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7. 외국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당진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3. (생 략)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말한다. 2. ---------- ---------- ---------- ---------- ----------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 ---------- ---------- ----------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7. 외국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붙임1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 ·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

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당진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외국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33			
정 책 명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지한	전화번호	041-350-32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아니요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조상연 의원**

❍ 제안이유: 내·외국인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및 외국인주민의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Ⅱ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정비 (안 제4조)

❍ 지원의 범위 확대 (안 제6조)

❍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신설 (안 제6조의2)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문구로의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추가 신설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려는 안으로써,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띄어쓰기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는 문구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6조(지원의 범위) 6.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제6조(지원의 범위) 6.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띄어쓰기 수정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2. 한국어 및 외국인주민의 부 또는 모의 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2.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교재 및 학습 지원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구로의 수정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65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심의수 의원, 최연숙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전영옥 의원, 김명회 의원, 전선아 의원, 한상화 의원

1. 개정이유

❍ 현행 설치·운영 중인 당진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공설묘지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당진시 공동묘지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 명시(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무연고자

다. 공설묘지 사용료 면제 대상 명시(안 제14조제2항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라.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 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3항)

마. 당진시 공동묘지 사용자의 범위 신설(안 제21조제2항)

바. 별표 2의4 석문공설묘지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항목 추가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붙임1]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첨부(연평균 5천만 원 미만)[붙임2]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32) [붙임 3]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4 . . ~ .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당진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2조 전단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의 제목 “(유골 등의 반환)”을 “(유골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신청)”을 “(사용신청 및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설치 할”을 각각 “설치할”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4호의 가족 봉안묘란 다음에 자연장(잔디)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당진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법 제5조---------- ---------- ---------- ---------- ---------- ---------- ---------. ---------- ----------.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유골 등의 반환) ① (생 략)	제15조(유골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	② ----------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구를 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드는 ---------- ----------.
<신 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신청) (생 략)	제21조(사용신청 및 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23조(설치제한) ① 공동묘지 내 가묘를 설치 할 수 없다.	제23조(설치제한) ① ---------- 설치할 -------.
② 공동묘지 내 가족 또는 종중묘지, 자연장지,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 ---------- 설치할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3.12.15>	별표 2의 제4호의 가족 봉안묘란 다음에 자연장(잔디)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개정 2023.12.15>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명칭	구분		단위	계약기간	계약(납부)금액			사용자 부담
					계	사용료	관리비	
1. 대호지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488,000	764,800	723,2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돌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5년	1,126,400	764,800	361,600	
	개인봉안묘		1기당	30년	892,800	458,880	433,920	
				15년	675,840	458,880	216,960	
	가족봉안묘		1기당(16구형)	30년	4,100,000	2,091,000	2,009,000	
				15년	3,075,000	2,091,000	984,000	
	봉안평장(와비)		1기당	30년	450,000	207,000	243,000	
	자연장(잔디)		1기당	45년	350,000	189,000	161,000	
	어성정	개인	1구	30년	509,200	345,600	163,600	유골함 구입비
				15년	427,400	345,600	81,800	
		부부	2구	30년	854,900	691,300	163,600	
				15년	773,100	691,300	81,800	
2. 솔뫼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449,600	659,200	790,400	유골함 구입비
				15년	1,054,400	659,200	395,200	
	가족봉안묘		1기당(24구형)	30년	5,436,000	2,472,000	2,964,000	
				15년	3,954,000	2,472,000	1,482,000	
	안향정	개인	1구	30년	400,000	268,000	132,000	유골함 구입비
				15년	332,000	265,600	66,400	
		무연	1구	10년	182,100	138,200	43,900	
3. 남부권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2,728,800	1,620,000	1,108,800	유골함 구입비
				15년	2,174,400	1,620,000	554,400	
	자연장(잔디)		1기당	45년	350,000	210,000	140,000	
4. 석문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204,800	659,200	545,600	유골함 구입비
				15년	932,000	659,200	272,800	
	가족봉안묘		1기당(24구형)	30년	5,436,000	3,044,000	2,392,000	
				15년	4,240,000	2,968,000	1,272,000	

[별표 2] <개정>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명칭	구분		단위	계약기간	계약(납부)금액			사용자 부담
					계	사용료	관리비	
1. 대호지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488,000	764,800	723,200	인건비 등 - 분묘 등 설치비용 시설 구입 및 설치 - 비석, 돌레석, 상석 - 와비(봉안평장) 자연장의 개별표지석 그 밖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15년	1,126,400	764,800	361,600	
	개인봉안묘		1기당	30년	892,800	458,880	433,920	
				15년	675,840	458,880	216,960	
	가족봉안묘		1기당(16구형)	30년	4,100,000	2,091,000	2,009,000	
				15년	3,075,000	2,091,000	984,000	
	봉안평장(와비)		1기당	30년	450,000	207,000	243,000	
	자연장(잔디)		1기당	45년	350,000	189,000	161,000	
	어성정	개인	1구	30년	509,200	345,600	163,600	유골함 구입비
				15년	427,400	345,600	81,800	
		부부	2구	30년	854,900	691,300	163,600	
				15년	773,100	691,300	81,800	
2. 솔뫼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449,600	659,200	790,400	유골함 구입비
				15년	1,054,400	659,200	395,200	
	가족봉안묘		1기당(24구형)	30년	5,436,000	2,472,000	2,964,000	
				15년	3,954,000	2,472,000	1,482,000	
	안향정	개인	1구	30년	400,000	268,000	132,000	유골함 구입비
				15년	332,000	265,600	66,400	
		무연	1구	10년	182,100	138,200	43,900	
3. 남부권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2,728,800	1,620,000	1,108,800	유골함 구입비
				15년	2,174,400	1,620,000	554,400	
	자연장(잔디)		1기당	45년	350,000	210,000	140,000	
4. 석문 공설묘지	분묘		1기당	30년	1,204,800	659,200	545,600	유골함 구입비
				15년	932,000	659,200	272,800	
	가족봉안묘		1기당(24구형)	30년	5,436,000	3,044,000	2,392,000	
				15년	4,240,000	2,968,000	1,272,000	
	자연장(잔디)		1기당	45년	350,000	210,000	140,000	

붙임1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 2. 1.]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32			
정 책 명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박성현	전화번호	041-350-33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붙임4 **관련 부서 검토의견**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심의수 의원**
- 제안이유: 현행 설치·운영중인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유골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여 공설묘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동묘지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관부서: **경로장애인과**

Ⅱ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신설 (안 제1조의2)
-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 명시 (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무연고자
- 공설묘지 사용료 면제 대상 명시 (안 제15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설치기간이 지난 유골 처리 기준 명확화 (안 제15조제3항)

❍ 당진시 공동묘지 사용자의 범위 신설 (안 제21조제2항)

❍ 별표2 석문공설묘지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항목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리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경로장애인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당진시 공설묘지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사용기간이 지난 유골의 처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묘지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일부 용어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적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조례 운영의 명확성 및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의2(정의)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	제1조의2(정의) 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	- 법령 문장의 간결화 및 명확화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지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연고자가 장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위법에 따라 어휘 통일
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위법에 따라 어휘 통일
제15조(유골 반환 등)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에 대하여 1년 이내 유골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제15조(유골 반환 등)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매장 또는 유골(무연고 유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상위법령 명시 및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신청 등) 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한다.	제21조(사용신청 및 대상 등) ②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대상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 1]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32) [붙임 2]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66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발 의 자: 김명진 의원, 전영옥 의원, 김명회 의원, 한상화 의원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11. 12. 16.)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예・결산 등)의 기능이 사라지고 회비 징수나 기부금 모집에 의한 협의회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원으로 변경되는 등 그 운영 방식에 있어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조례는 종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작성 및 시장의 인가 절차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취지 및 현행 운영 형태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의 법적합성 제고 및 보건소진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기존)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변경)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나. 협의회 조직 및 위촉,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바.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아. 협의회 수당 지원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4. . ~ 2025. 4.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별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수당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액
협의회장	회의 참석수당	60,000원
	도회의 참석수당	80,000원
위원	회의 참석수당	20,000원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명진 의원**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원으로 변경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조례는 종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시장의 인가 절차 등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취지 및 현행 운영 형태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
- 이에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례의 법적합성 제고 및 보건소진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Ⅱ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기존)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변경)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협의회 조직 및 위촉, 회장 및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ㅈ데9조)

❍ 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 (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보건행정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 운영 방식을 따르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 및 현행 운영 형태를 바르게 규정하여 보건진료운영협의회의 체계적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및 안 제5조의 조문 제목과 관련하여 수정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조례 내 용어의 통일 및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문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2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2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협의회 구성 시, 성비 고려)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 조례 내 용어 통일을 위한 수정

Ⅴ 참고사항

❍ 관련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붙임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있음(2025A충남당진025)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박윤희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5A충남당진025</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충청남도 당진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보건행정과</td></tr>
<tr><td>담당자명</td><td>홍아현</td><td>전화번호</td><td>041-350-3362</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5년 3월 10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td><td colspan="4">*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 · 문화적 차이 등) : 모르겠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아니요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중 성별영향평가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제2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td><td>제2조(조직) ② 협의회의 위원은 ~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td><td>’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중 성별영향평가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td></tr>
</table></td></tr>
</table>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3월 1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보건행정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김명진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별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수당 지원 기준

구 분		지원액
협의회장	회의 참석수당	60,000원
	도회의 참석수당	80,000원
위원	회의 참석수당	20,000원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67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발 의 자: 김명회 의원, 김명진 의원, 심의수 의원

1. 개정이유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또한 대폭 향상되었음. 당진시도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지역의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조례는 웰다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존엄성 있는 죽음과 관련하여 ‘웰다잉’이라는 용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고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조례에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밖에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례 이해도와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조례의 규정을 각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9조)

마. 그 밖에 문장,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4. . ~ 2025. 4.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임종 과정에서”로, “보호함”을 “보호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추진 등)”을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종문화”를 “웰다잉 문화”로, “추진 할”을 “추진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임종문화”를 각각 “웰다잉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전한 임종문화”를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웰다잉 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임종문화”를 “웰다잉 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임종문화”를 “웰다잉 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를 “웰다잉 문화 홍보에 필요한”으로, “홍보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6조 중 “임종문화”를 “웰다잉 문화”로 한다.

제7조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를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비밀의 유지)”를 “(비밀 유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임종과정에서 --- 보호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신 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
<신 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	제4조(사업 추진) ① ---------- 웰다잉 문화 ---------- 추진할 -----. 1. --------- 웰다잉 문화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4. --------- 웰다잉 문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사업	6.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웰다잉 문화 -------
7. 그 밖에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웰다잉 문화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 있다.
<신 설>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 웰다잉 문화 ----------.
②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 웰다잉 문화 홍보에 필요한 ---------- 물품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 웰다잉 문화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 법 제6조에 따른 ----------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생 략)	제8조(비밀 유지)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명회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임종문화'라는 용어를 대중들에게 친숙한 '웰다잉'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조례 이해도를 제고하고
-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Ⅱ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2조)

❍ 조례의 규정을 각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9조)

❍ 그 밖에 문장,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일부 수정**

- 본 조례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웰다잉’이라는 용어로의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법 적합성을 제고하므로 개정 타당함
- 다만, 조문 내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필요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 본 개정안은 ‘임종문화’를 대신하여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4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일부 조문과 관련하여 내용의 간결화 및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존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임종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 문자의 간결화 및 명확화
제3조(시장의 책무)② 시	제3조(시장의 책무)② .시	- 모호한 표현 삭제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붙임1]**

❍ 예산조치: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30)**[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사업 추진)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건강증진과 오세영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30			
정 책 명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백수정	전화번호	041-360-606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건강증진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김명회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당진시 존엄성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당진시민----------.
<신 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 2.・3. (생 략) 4.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 관련 시민교육과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제4조(사업 추진) ① ---------- 웰다잉 문화 ---------- 추진할 -----. 1. --------- 웰다잉 문화 ---------- 2.・3. (현행과 같음) 4. --------- 웰다잉 문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사업	6.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웰다잉 문화 -------
7. 그 밖에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웰다잉 문화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 있다.
<신 설>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조건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 웰다잉 문화 ----------.
②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 웰다잉 문화 홍보에 필요한 ---------- 물품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 웰다잉 문화 ----------

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법 제6조에 따른 ---------- ---------- ---------- ---------- ---------- ----------.
제8조(비밀의 유지) (생 략)	제8조(비밀 유지)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868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발 의 자: 김봉균 의원, 윤명수 의원, 김명진 의원, 김명회 의원

1. 개정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20개 조문을 총 9장 42개 조문으로 확대 규정하여 상위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 동시에 유사 조례인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운영의 실익이 없고, 일부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총 9장으로 구분함

- 제1장 총칙 /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 /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 지원 /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 /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 운영 /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나.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

다.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안 제6조 ~ 제10조)

- 시장의 기준,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규정

라.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1조 ~ 제1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규정

마.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안 제15조 ~ 제18조)

-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

바.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 지원(안 제19조 및 제20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 감경을 규정

사.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안 제21조 ~ 제23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를 규정

아. 제7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안 제24조 ~ 제29조)

- 상인회 설립과 등록, 상인회의 등록 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 비치 및 관리,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을 규정

자.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 운영(안 제30조 ~ 제31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규정

차.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안 제32조 ~ 제42조)

- 시설물의 소유권, 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위탁 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 수익금의 사용, 지도 · 감독, 인가 · 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규정

카.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타. 일반적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5. 4. . ~ 2025. 4. .) 결과 :
- 관련부서 의견 : 검토의견 첨부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당진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당진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진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구역)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

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당진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으로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당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화재예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편의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를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따를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내부의 도로: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쇼핑카트를 양측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당진시장이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제6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당진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자 및 상인회 회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인정서를 지체 없이 당진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당진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

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당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당진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등) ① 당진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

을 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의 판매 물품은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의 감경) 당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

제21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인 경우 :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2. 상점가인 경우 : 동일상권의 유지여부

제2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당진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한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당진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4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당진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당진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당진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지원) 당진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서류 비치 및 관리)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당진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당진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및 횟수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제34조(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8조와 같다.

제35조(위탁 관리) ① 당진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주차장 조례」,「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의 대상 범위

2. 위탁 관리 기간

3. 위탁 관리에 따른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납부 방법

4.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당진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당진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8조(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지도·감독) ① 당진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당진시장은 상인조직이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당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지원 등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 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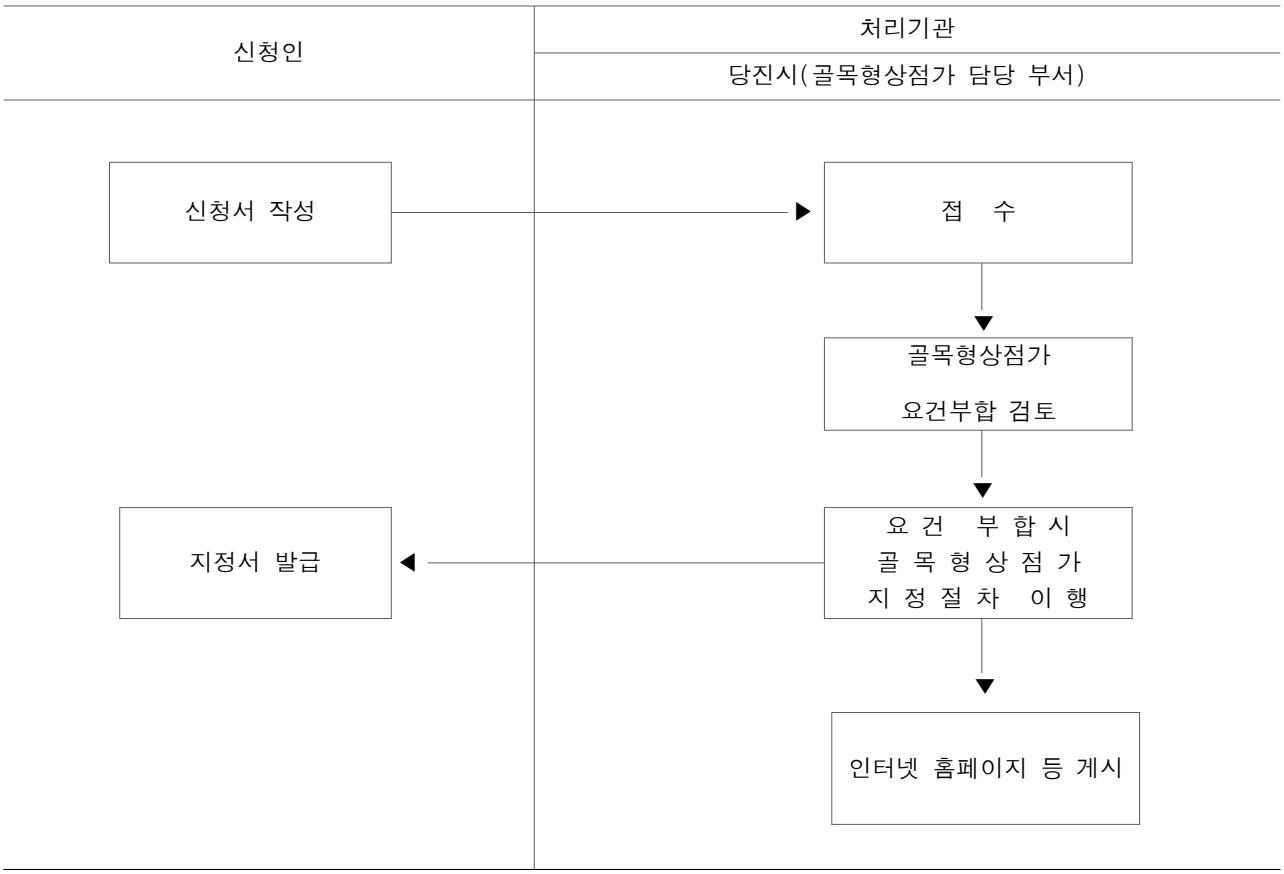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당진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 례 명: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김봉균 의원**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해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라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Ⅱ 주요내용

❍ 조례를 총 9장으로 구분함

- 제1장 총칙 /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 /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 /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제5조)

-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

❍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 (안 제6조 ~ 제10조)

- 시장의 기준,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를 규정

❍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안 제11조 ~ 제1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를 규정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안 제15조 ~ 제18조)

-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안 제19조 및 제20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 감경을 규정

○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 (안 제21조 ~ 제23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를 규정

○ 제7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안 제24조 ~ 제29조)

- 상인회 설립과 등록, 상인회의 등록 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 비치 및 관리,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규정

○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안 제30조 ~ 제31조)

- 시장 관리자의 지정,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를 규정

○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안 제32조 ~ 제42조)

- 시설물의 소유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위탁 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 수익금의 사용, 지도·감독,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규정

○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일반적 경과조치를 둠 (안 부칙 제3조)

-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함

Ⅲ 검토의견

❍ **소관부서(지역경제과) 종합의견**: 개정 타당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 골목형상점가 규정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 혜택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므로 개정 타당함.

❍ **관련부서(감사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개정 적법, 일부 수정 필요

-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법령 불부합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의하기 위한 안으로써,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음.
- 다만, 법령 문장 형식 및 법령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 필요

Ⅳ 수 정 안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② 당진시장이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② 당진시장이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인정서를 지체없이 당진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인정서를 지체없이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③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③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법령 형식의 문장으로 수정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지원 등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모호한 표현 삭제

의원 제출안	부서 수정안	수정이유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V 참고사항

❍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붙임1]**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의안) **[붙임2]**

❍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5A충남당진021) **[붙임3]**
-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생 략)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

수 ·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 13. (생 략)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

려는 자(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 · 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 ·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 ·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 · 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 ·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

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 · 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 · 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 ·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

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 · 상점가 및 시장 ·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 상점가 및 시장 ·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 상점가 및 시장 ·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생　략)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

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 4.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 3. (생 략)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3항 : 주요시설물 위탁관리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 지원
 - 안 제26조 : 전통시장법 제65조4항(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지원규정도 상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함.

4. 작성자 : 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충남당진021			
정 책 명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윤철원	전화번호	041-350-404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 없음 / 3-2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아영/041-350-3739)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4 **의원발의 조례안(김봉균 의원)**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당진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당진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진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구역)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당진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으로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당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화재예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를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따를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기

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내부의 도로: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쇼핑카트를 양측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당진시장이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당진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자 및 상인회 회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인정서를 지체없이 당진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당진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당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

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7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당진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등) ① 당진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의 판매 물품은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 사용료의 감경) 당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6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관리

제21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인 경우 :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2. 상점가인 경우 : 동일상권의 유지여부

제2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당진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한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당진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4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당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당진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당진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지원) 당진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서류 비치 및 관리)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당진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당진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및 횟수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제34조(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8조와 같다.

제35조(위탁 관리) ① 당진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주차장 조례」,「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의 대상 범위

2. 위탁 관리 기간

3. 위탁 관리에 따른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납부 방법

4.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당진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당진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8조(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지도・감독) ① 당진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당진시장은 상인조직이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

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당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 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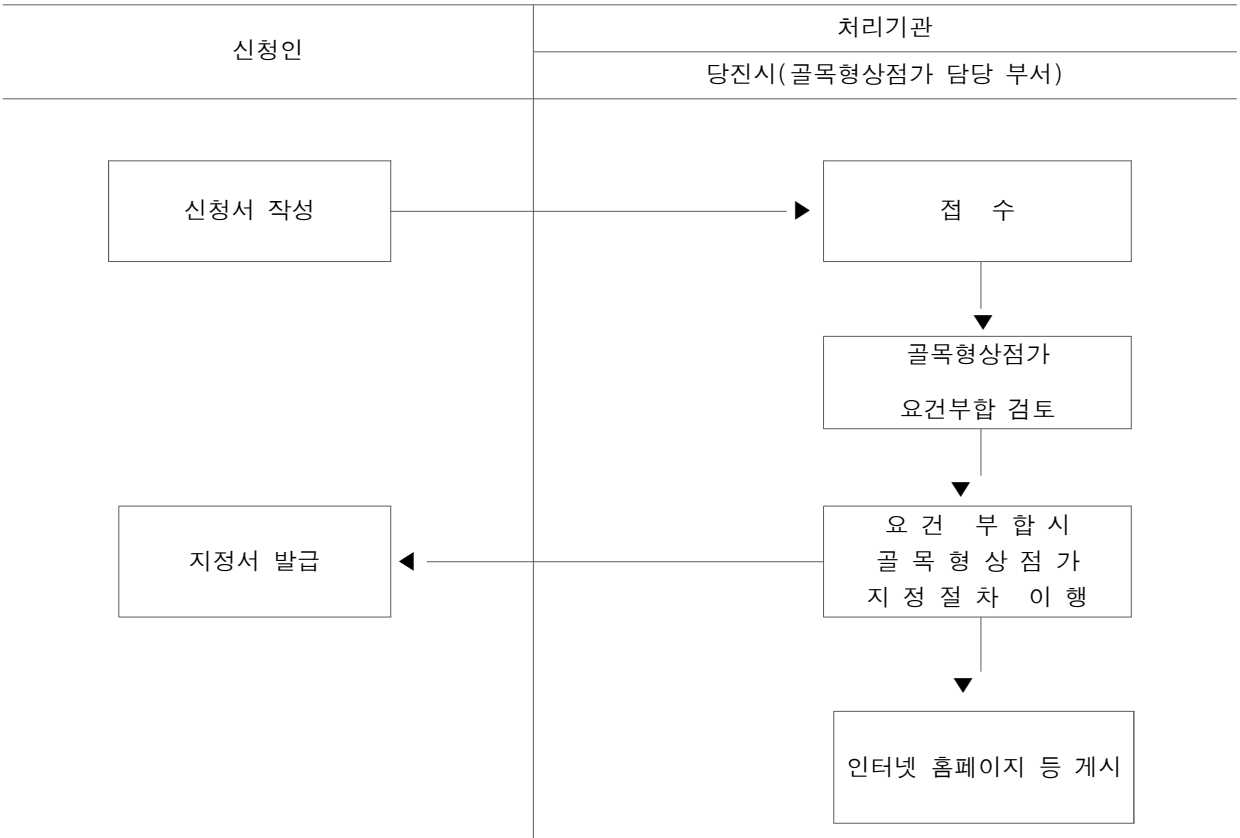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 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1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 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당진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869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일

발 의 자: 김명진 의원, 김봉균 의원
박명우 의원, 전영옥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

1. 제정이유

○ 당진시에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자재의 수거와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폐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폐농자재”, “농업인등”, “재활용”에 대해 정의함.

나. (안 제3조) 적용 범위를 규정

다. (안 제4조) 시장과 농업인등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 폐농자재의 발생량, 수거량, 처리현황,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대해 규정함.

라. (안 제6조) 폐농자재 적치 장소의 지정과 설치, 수입과 운반 및 처리, 폐농자재 감량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재활용 사업과 집중 수거 기간의 운영과 그에 따른 운반, 처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마. (안 제7조~제8조) 폐농자재의 적치 장소의 지정과 설치, 적치된 폐농자재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바. (안 제9조~제10조) 폐농자재의 업무위탁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